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복기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321

발의연월일: 2024. 11. 6.

발 의 자:복기왕・이기헌・정성호

이연희 · 안태준 · 윤종오

정준호 • 한민수 • 민홍철

박용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부 구간이 개통됐고 신규 건설 또는 기존 철 도노선을 활용하는 사업도 시행되고 있으며,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구간도 있고 지자체 요구 등에 따른 원인 자 부담으로 추진되는 구간도 있음.

특히,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부 구간은 원인자 부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큼에 따라 사업진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, 원인자 요구에 의한 사업 중 국비의 일부 부담 규정이 법령상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 사업 등 기존 철도노선을 연장 또는 개량하여 신규 노선으로 활용하거나 이와 연계하여 기존 역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비용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 하의 범위에서 국가가 부담하고, 이에 해당하는 역이 환승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원인자와 국가 간 비용에 대한 일부 부담 비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4항).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제3항에 따른 국가 이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(이하 "원인자"라 한다)가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- 1.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운영 중인 철도노선을 옮겨 설치하는 경우: 옮겨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
- 2.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(해당 철도 노선이 포함된 기본계획이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이후의 철도 노선을 말한다. 이하 제3호에서 같다)의 지하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: 경제적으로 가장 적합한 지점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비용과 비교하여 추가로 드는 건설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
- 3.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: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8조제3항의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역 시설 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

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. 다만, 역사(驛舍)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은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한 다.

- 4.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의 철도노선을 연장 또는 개량하여 신규 노선으로 활용하거나, 이와 연계하여 기존 역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: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8조제3항 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사업 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수 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가 부담. 다만, 역사(驛舍)가 환승역인 경우 에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한다.
- 5.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: 건설·증축 또는 개축하는 데 드는비용(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)의 전액을 원인자가부담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1조(수익자 · 원인자의 비용부 | 제21조(수익자 · 원인자의 비용부 담) ① ~ ③ (생 략) 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3항에 따라 국가 이외의 ④ 제3항에 따른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비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 요구하는 자(이하 "원인자"라 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대통 한다)가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령령으로 정한다.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다 음 각 호에 따른다. 1.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운 영 중인 철도노선을 옮겨 설 치하는 경우: 옮겨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 자가 부담 2.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 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 (해당 철도노선이 포함된 기 본계획이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이후의 철도노선을 말 한다. 이하 제3호에서 같다) 의 지하에 철도시설을 건설하 는 경우: 경제적으로 가장 적 합한 지점에 철도시설을 건설

하는 경우의 건설비용과 비교 하여 추가로 드는 건설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

- 3.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:
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8조제3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역 시설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. 다만, 역사(驛舍)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은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한다.
- 4.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의 철도노선을 연장 또는 개량하여 신규 노선으로 활용하거나, 이와 연계하여 기존역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: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제18조제3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사업 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 이상 100

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국 가가 부담. 다만, 역사(驛舍) 가 환승역인 경우에는 건설비 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 담한다.

5.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 존의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 는 경우: 건설·증축 또는 개 축하는 데 드는 비용(역사 진 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 다)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